

-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2018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연 2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에 대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2017년 처음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자 특정감사를 재실시하였음.
- ▶ 이번 특정감사는 보조금 지원 기준 적법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3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187,411원(추징 2,031원, 회수 185,38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자체감사의 종류)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 2018년 감사업무 종합 계획 [감사실-8032 (2017. 12. 28.)]

2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8. 5. 23.(수) ~ 6. 1.(금) [8일간]
- ☐ 감 사 장 : 3층 상설감사장
- ☐ 감사반원 : 1개 반 4명
- ☐ 감사범위 : 2017. 1. 1. ~ 2017. 12. 31.
- ☐ 감사내용 : 보조금 지원 기준 적법성, 보조금 등 집행의 합리성 및 적법성 등
- ☐ 감사대상

연 번	관련부서	단 체 명		보조금지원액 (2017년) (원)	비고
	총 5 개	총 24 개		229,513	
1	총무과	9	*** ** ***** ***** 사)***** ***** 사)***** ***** ***** *****	총 계:120,710 운영비: 30,000 사업비: 90,710	
2	교육지원과	5	##### ##### 사)##### #####'##' #####'##'	사업비: 12,000	
3	노인 장애인과	4	사)***** 사)***** 사)***** *****	총 계: 68,136 운영비: 19,000 사업비: 49,000	
4	가정정책과	5	##### #####, ##### 사)##### #####	사업비: 17,330	
5	교통행정과	1	사)#####	사업비: 11,337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 사 사 항
지원방침 준수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 편성 -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배제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지원 필요성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 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준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 지방보조사업 자체 심의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실적보고,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단체별 사업추진 (예산회계 포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자부담 반영 및 집행 - 전년도 정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개선 등 - 예산·회계 처리의 적법성, 합리성, 투명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사업변경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준수 여부 등

II

단체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 총무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9개 단체 / 29개 사업			120,710
*** *****	계 (8개, 운영비 포함)		56,378
	새마을운동 지원 육성 및 지회 영비(법정운영비)	매월	10,000
	건강백세 어르신 효도잔치	2017. 6월~7월	2,760
	소외계층 계절김치 담아주기	연중(총 3회)	7,350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 **	새마을방역안전지킴이 활동	2017. 6월~10월	1,300
	2017년 새마을국민교육(새마을지도자 기본교육)	동 지원금 분기별 배분	3,768
	제7회 새마을의 날 기념 연찬회	2017. 4월	6,000
	소외이웃 돌봄사업(동보조)	연중(총 41회)	23,000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2017. 7월	2,200
***** *****	계 (5개, 운영비 포함)		21,773
	사무국 운영비(법정운영비)	매월	10,000
	법질서 고취 및 안전문화 캠페인	2017. 6월, 9월	1,450
	우리고장 희망의 숲 가꾸기	2017. 10월	4,878
	일일차집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2017. 9월	1,095
	이웃사랑 지역사랑 김치나누기	2017. 11월	4,350
***** *****	계 (6개, 운영비 포함)		17,455
	지회운영 및 조직활동경비(법정운영비)	매월	10,000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아동안전지킴이'	2017. 3월~12월	1,500
	6.25전쟁당시 음식 재현시식	2017. 6월, 10월	1,050
	나라사랑 연수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2017. 8월	2,125
	새터민과 함께하는 안보유적지 견학	2017. 10월	1,780
	이웃사랑 밑반찬 만들기	2017. 11월	1,000
사)***** *****	계 (1개)		2,200
	안보통일교육	2017. 3월~11월	2,200
***** **** *****	계 (2개)		6,179
	새터민과 함께하는 추석음식 만들기	2017. 9월	1,150
	제6회 연수구 통일합창대회	2017. 10월	5,029
사)***** *****	계 (2개)		6,904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2017. 5월~12월	3,280
	교통질서캠페인 및 지역청결운동	2017. 5월~12월	3,624
사)**** *****	계 (2개)		4,853
	정화활동 및 기초질서 홍보	2017. 5월~12월	1,509
	생태교육	2017. 5월~12월	3,344
***** ****	계 (1개)		1,900
	평화이야기한마당	2017. 9월	1,900
*** *****	계 (2개)		3,068
	SAFE 연수 만들기 결의대회 및 실천캠페인	2017. 10월	550
	야간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연중 (주 4회)	2,518

☐ 교육지원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5개 단체 / 5개 사업			12,000
#####	보석을 찾아라	2017.9.2.~10.21.	2,200
##### ##	독서멘토되기 프로젝트	2017.3.20.~5.31.	2,050
사)#####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육성	2017.3.2.~10.31.	3,000
##### #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2017.4.1.~12.31.	2,800
##### ##	미래국악 젊은 우리가 이어가자	2017.4.8.~10.21.	1,950

☐ 노인장애인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4개 단체 / 12개 사업			68,136
사)***** *****	계 (7개, 운영비 포함)		55,562
	운영비	연중	19,984
	인천장애인축제한마당	2017. 9월	5,190
	중증장애인야외체험지원사업	2017. 6월	2,784
	전국지체장애인의날 기념행사	2017. 10월	1,780
	인천광역시장애인게이트볼대회	2017. 6월	600
	장애인무료교통봉사	연중	4,800
	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센터	연중	20,424
사)***** *****	계 (3개)		5,974
	기초교통질서지키기캠페인전개	연중	774
	장애인문화누리기	2017. 5월	3,190
	장애인차량이동봉사운영사업	연중	2,010
사)***** *****	계 (1개)		3,600
	수화통역사양성과정	2017. 3월~11월	3,600
*****	계 (1개)		3,000
	장애인평생교육 녹청자도자기	2017. 3월~9월	3,000

□ 가정정책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5개 단체 / 6개 사업			17,330
#####	계 (2개)		11,630
	행복한 가정만들기 세상사는 이야기 쇼	2017. 11. 27.	3,380
	무의탁 어르신 합동 산수연	2017. 10. 30.	8,250
#####	모범청소년 장학금지급 및 청소년지킴이 축제한마당	2017. 12. 2.	2,000
##### ##	청소년 소설 프로젝트	2017. 6월~10월	1,250
사)##### ####	청소년선도 캠페인	2017. 12. 22.	1,500
##### ####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 활동	2017. 4월~12월	950

□ 교통행정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사)*****	주요교차로 교통보조근무, 거리 캠페인, 우측보행캠페인, 관내 행사 교통 통제 등	2017.3월~12월	11,337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연 2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에 대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2017년 처음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자 특정감사를 재실시하였다.

- ▶ 이번 특정감사는 보조금 지원 기준 적법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3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 187,411원(추징 2,031원, 회수 185,38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한다.
- ▶ 2015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 ▶ 2017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에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고,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 함에도 자부담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자부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 ▶ 관련부서에서는 2017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검사 시 2017년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 체계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 ▶ 2018년 특정감사 결과 2017년 지적되었던 자부담금 예치 여부 미확인, 보조금(또는 자부담)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었으며, 이는 2017년 특정감사를 7. 17. ~ 7. 28. 실시하였기 때문에 감사결과의 반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2 지적사항 목록

□ 지적사항별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재정상(원)	
	총 7건 (주의 4건, 시정 3건 / 추정 2,031원, 회수 185,380원)		187,411	
1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확인 소홀 ☞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통장 미확인 (충무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교통행정과)	주의		
2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금이자 반납 미이행 ☞ 보조금 전용통장 예금이자 미반납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시정	추정 2,031원	
3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결정 용도 외 집행 ☞ ○○○○○○○○○○○○○○○○○○○○○○○○○○○○○○○ (주류구입 : 185,380원)	시정	회수 185,380원	
4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미사용 ☞ 간이영수증 첨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충무과 3건, 교육지원과 2건, 가정정책과 2건)	시정		(세금) 계산서 발행
5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 체크카드 미사용, 계좌이체 ☞ 자부담 사업비를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후 자부담 사업비 지출 처리 (교육지원과 : ##### ##)	주의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새마을방역안전지킴이 활동사업 추진 시 주유권을 각 동 새마을회 지급하였으나 활동실적보고 및 주 유권 사용내역 미제출(충무과 : ○○○○○○○○○)	주의		
7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 ☞ 연수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활동 추진, 차량유류비 집행에 대한 운행일지 또는 근무일지 미보고 (가정정책과 : *****)	주의		

□ 부서별 현황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요구	비고
총무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주의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주의	*****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주의	*****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미사용에 관한 사항	시정	***** *****
교육지원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주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금이자 반납 미이행	시정	추징 1,549원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주의	##### ##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시정	##### ##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주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금이자 반납 미이행	시정	추징 482원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주의	*****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결정 용도외 집행	시정	##### 회수 185,380원
가정정책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주의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시정	*****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	주의	*****
교통행정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주의	

IV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1.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확인 소홀

【 총무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교통행정과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다만,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자부담금이 예치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총무과에서는 *****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정산의 명확화를 위한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3개의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금이자 반납 미이행

【교육지원과】 ▶ 처분요구 : 재정상 추징 1,549원

【노인장애인과】 ▶ 처분요구 : 재정상 추징 482원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 및 집행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 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교육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는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도 발생하였음에도 예금이자를 반환토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결정 용도 외 집행

【 노인장애인과 : 사)***** 】

▶ 처분요구 : 재정상 회수 185,380원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사)*****는 기초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사업과 제11회 장애인 및 유가족 문화누리기 사업 추진 시 주류구입비 185,38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4.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 총무과 : ***** , ***** 】

【 교육지원과 : ##### ## 】

【 가정정책과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첨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더불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 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같은 기준에 따르면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그러나, *****등 4개 단체는 보조금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다.

5.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 총무과 : *****, ***** 】

【 교육지원과 : ##### ## 】

【 노인장애인과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다만,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시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고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 기준에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한다는 의미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는 자부담금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만 첨부하여 계좌이체하고, 밑반찬만들기 및 김장나누기 사업에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주류를 구입하였으며, *****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만 첨부하여 계좌이체하는 등 자부담 사업비 집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또한, ##### ##에서는 자부담금을 예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부담금 집행처리를 하였고, *****는 도자기 교실 및 전시회 관련 물품 구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다.

6.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는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 *****는 새마을 방역안전지킴이 활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1,300천원을 13개동에 각 10만원의 주유권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정산 보고 시 방역 활동실적 및 지급한 주유권 수불부 등 방역안전지킴이 활동을 추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어야 하나 각 동에 지급한 주유의뢰서만으로 정산을 하여 사업 실적 보고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7.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

【 가정정책과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은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활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수구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주유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체크카드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V

개선사항

분야	현실태	개선사항	관련부서
계좌이체 송금수수료	- 사업비 집행 시 소요되는 계좌이체 송금수수료를 자부담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 송금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내역이 불일치함.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 송금수수료를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보고 시 수입과 지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공통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관련	-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장계좌번호만 제출하고 자부담금 예치내역은 확인하고 있지 않음. - 조기집행을 제고를 위해 사업시기가 도래하기 전 상반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 대부분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 사업의 경우 미리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 보조금 신청 시 통장계좌사본과 함께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시 보조사업 시기에 따라 자부담 예산액 확보 시점을 정하고, 향후 자부담액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공통